

국제화 활동 운영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 “혁신·공유·정의 지향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국제화 사업 및 참여인력의 국제화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국제화 사업 및 활동) 교육연구단은 연차별로 각종 국제화 사업 및 참여인력의 국제화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연구지원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진, 관리, 평가한다.

1. 교육연구단은 연 1회 이상 국제 학술대회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개최한다.
2. 교육연구단은 해외 저명 학자 초빙, 참여인력 파견, 고급 학술 외국어 특강,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연구, 학위논문 공동 지도교수제와 박사후연구원 공동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세미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활동, 해외 학술기관과의 공동 연구, 해외 교수의 연구 지도, 국제적 수준의 논문 작성을 위한 해외 파견, 해외 인턴십, 기타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제3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교육연구단 참여인력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등록비), 왕복 항공료,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주관 학회의 성격, 학술대회 규모, 참가 기간과 지역,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한다.

1. 참여대학원생이 단독 혹은 주저자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단순 참가나 견학은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동 발표, 초록 발표, 포스터 발표, 온라인 발표 등은 차등 지원한다.
2. 국제 학술대회 참가 예정인 참여인력은 참가 2개월 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해외연수) 교육연구단은 참여인력의 단기·장기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1. 참여인력은 15일 이내의 단기 해외연수 및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 해외연수는 참가 2개월 전, 장기 해외연수는 참가 6개월 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30일을 초과하는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수는 지원할 수 없다. 참여대학원생의 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장기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일정 수준의 어학 검정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학위 과정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4. 연구지원위원회는 연수 계획의 우수성, 사전 준비의 충실성과 연수 역량, 국제 공동 연구의 발전 가능성, 대상 기관의 성격과 수준, 연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을 결정한다.
5. 단기 해외연수는 대학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해야 하며 개인성 경비, 연수 목적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체재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6. 장기 해외연수는 여비, 수업료, 숙박비, 기타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연수 기관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7. 해외연수의 변경 및 중단은 사전에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참여인력은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연구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8. 단기·장기 해외 연수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서식은 본교 여비 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 제4장을 따른다.

제5조(해외 인턴십) 교육연구단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인턴십 활동을 지원한다.

1. 해외 인턴십을 신청하는 참여대학원생은 개시 6개월 전에 지원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어학 능력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 연구지원위원회는 해당 기관과의 협약 내용, 구체적인 활동 계획, 공동 연구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3. 해외 인턴십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활동 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 과제와 중복하여 경비를 지원받거나 취업 활동을 겸할 수 없다. 인턴십 활동 기간에 따라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개시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4. 해외 인턴십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 의료보험료 등은 활동 기간과 내용에 따라 교육연구단과 상대 기관의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해외 인턴십 활동 중 조기 귀국 혹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교육연구단에 보고하고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서식은 상위 지침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연구단 연구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